

## KEI 포커스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 제9권 제5호 통권 제75호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발행인 윤제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Tel 044-415-7777  
 등록 제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 202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강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신지영 | 센터장 송영일 | 선임연구위원 장 훈 | 연구위원 조한나 | 부연구위원 박진한 | 부연구위원  
 홍제우 | 부연구위원 정선희 | 책임연구위원 김이진 | 전문연구위원 서은희 | 행정원 김창덕 | 초빙연구위원  
 이동영 | 초빙연구위원 박현주 | 위촉연구위원 양태경 | 위촉연구위원 임희정 | 위촉연구위원  
 [글로벌환경협력센터] 강주연 | 전문연구위원

### 요 약

**현 안** 한국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추진,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 등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기후위기대응법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을 통한 정책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주요 내용** 본고에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더불어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방향과 구성, 항목, 내용을 제시하였다.

**정책 제언** 기후변화 적응 법제는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기반하고, 기후변화 위험 저감 및 탄력성 증진이라는 현명한 적응(Wise Adaptation)의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불확실성, 포괄성, 지역성 등 기후변화 적응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된 적응(Planned/Active Adaptation)이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취약성·위험 평가의 과학적 근거 구축 → 적응계획 수립·시행 → 적응 주류화, 취약계층 보호 등 기후변화 적응의 확산 및 촉진 → 정책 효과 모니터링의 과정 중심 체계로 구성하고 거버넌스 구축과 적응기반 강화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 본 내용은 2021년 1~3월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KEI 그린뉴딜입법대응 TF」에서 10차례에 걸쳐 발표·논의한 내용 일부를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

# I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 법제

## 1 배경 및 필요성

- ◆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더불어 관련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립 등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 ‘탄소중립’,<sup>1)</sup> ‘넷제로(Net-zero)’는<sup>2)</sup> ‘1.5도 기온상승 제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함
- ◆ ‘문제의 원인’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문제’ 그리고 ‘발생할 것으로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과 탄소중립 달성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겪어야 하는 문제들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함
- ◆ 기후변화 적응은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는 기후변화 완화와 달리 한계가 있으므로 탄소중립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응정책 추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반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함
-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률 및 정책은 1997년 54개에서 2014년 804개(Nachmany et al., 2015), 2021년에는 2,24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sup>3)</sup> 이는 기후위기 심각성과 더불어 입법을 통한 정책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함
- ◆ 그간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제안된 법안 현황을 보면, 1993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이 최초로 시도된 후 2017년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이어 2020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등 현재까지 총 34건이 제안됨(2021년 6월 기준)<sup>4)</sup>
  - 2020년과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기후위기대응법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등이 제안되었으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금년 10월 시행 예정
- ◆ 본고에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더불어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을 위하여 법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방향과 구성, 항목, 내용을 다루고자 함

1)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활동.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사용한 용어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기후중립(Climate Neutral)과 동일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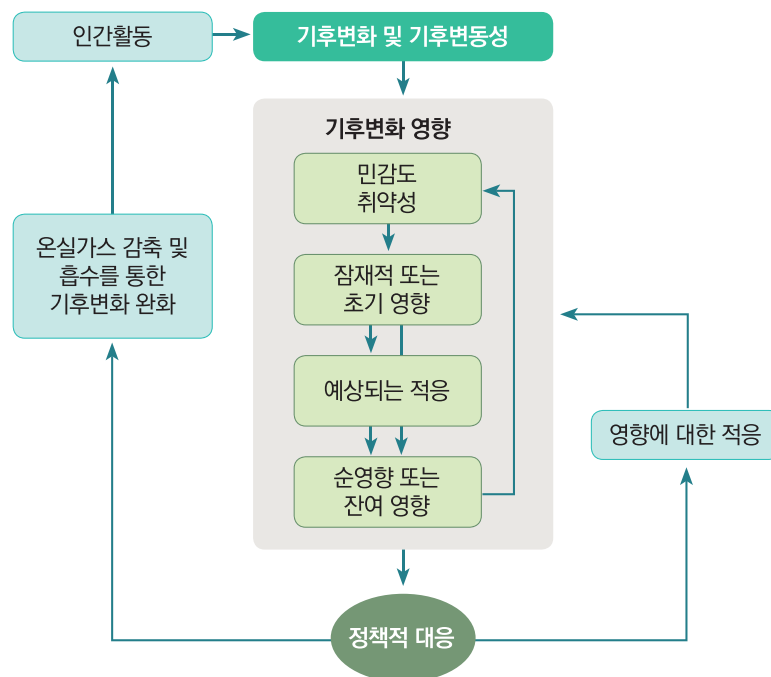
3) 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 “climate change”, 검색일: 2021.5.26.

4)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기후”, 검색일: 2021.6.1.

## 2 기후변화 적응

-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흡수하는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됨
- ◆ 기후변화 적응은 배출된 온실가스로 기후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를 파악·예측하고 발생 또는 예측된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 ◆ 기후변화 적응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접근방법과 일상화된 것의 활용방법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며, 실제 기후변화 적응을 문제 해결 측면에서 논의할 때는 개념 정립과 범위 설정이 필요함
  -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변화할 세상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혹은 혁신적인 방법들에 대한 개발과 발굴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매우 창조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기술·전략·정책 등이 필요
  - 또한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날씨와 이상기후 등을 경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실생활에서 일반화되었거나 도입이 시작된 지식과 기술·정책 등의 활용 또한 요구됨
- ◆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 적응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목표 설정, 성과지표 개발, 적응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의 단계로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날씨가 더우면 옷을 얇게 입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등의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행동과는 구분됨

그림 1. 기후변화 적응 개념



자료: Smit et al.(1999) 바탕으로 저자 작성.

# II 기후변화 적응 법제 동향

## 1 우리나라 관련 법률 현황

-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64개 조항 중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함 (신지영 외, 2016)
  - 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기상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분석 및 영향·취약성 평가, 평가 결과 공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자체(광역시·기초)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협의체 구성·운영, 국가·지자체 적응대책 실적 점검 등
- ◆ 기후감시·예측, 물, 생태계, 농수산, 건강, 국토/연안, 산업/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 개별 법령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 중임

**표 1. 부처별 소관 법률상 기후변화 적응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법령명/조항	주요 내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기상청	「기상법」 제21조	기후변화 대책 마련 지원을 위한 기후 영향 관계 조사 및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작성 등 기후변화 추세 예측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결과를 공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산림청	「산림기본법」 제20조의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을 위한 산림 활용 시책 수립·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결과 공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취약 생태계 조사 실시

구분	법령명/조항	주요 내용
산업부	「산업발전법」 제6조	부문별 강화시책에 산업 부문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적응방안 포함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결과를 공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해양 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7조, 24조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교란 실태 및 취약생태계 현황 조사, 해양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필요시책 마련,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환경정보 및 관련 기술 교류, 상호 협력
	「연안관리법」 제34조의 2, 6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연안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고, 연안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안 재해 위험평가를 매년 실시
행정 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6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예측하여 방재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적용 권고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4	기후변화에 대한 물관리 시설(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취약성 등을 조사, 취약한 시설 개선 등 권고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취약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2, 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포함,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지정·운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주요국의 관련 법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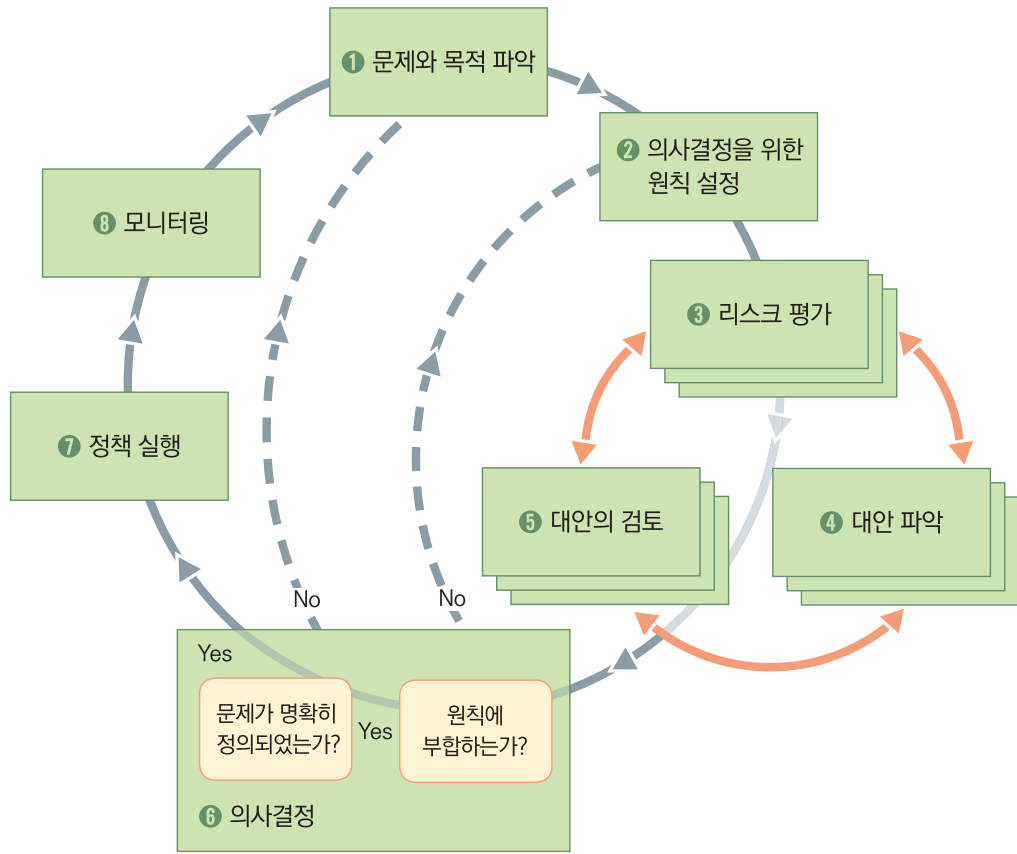
- ◆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전후로 유럽 주요국은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와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함
  - EU 집행위원회는 그린 딜('19.12) 후속 조치로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후법」(Climate Law)을<sup>5)</sup> 제안('20.3),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제4조에서 회원국별 기후탄력성 강화를 위한 적응전략의 수립·이행을 요구
  - 영국의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은 총 6장, 10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장에서 최대 5년 주기 기후변화 영향 국가보고서 마련, 국가 적응 프로그램 작성 및 적응 진척 보고 등을 명시

5) 정식 명칭은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999임.

- 핀란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은 17개 장으로 구성, 제6장에서 중장기 기후변화 정책 및 적응계획을 위한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제8장을 통해 기후위험 및 취약성 검토, 부처별 적응계획 및 활동을 포함한 국가적응계획을 최소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스위스는 「이산화탄소 감축법」(Federal Act on the Reduction of CO<sub>2</sub> Emissions)의 제8조를 통해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자산손실에 대한 저감 수단 마련을 명시
- ◆ 뉴질랜드는 2019년 「기후변화대응법」(Climate Change Response (Zero Carbon) Amendment Act 2019) 개정을 통해 2050 넷제로 목표를 법제화
  - 10개 장 중 Part 1C장에서 국가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사회·환경·생태적 위험성 평가 및 향후 6개년에 대한 국가적응계획 마련 포함
- ◆ 멕시코는 2012년 「기후변화 일반법」(The General Law on Climate Change)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 관련 영향·위험평가, 6년마다 국가 적응전략 및 프로그램 마련, 국가·연방·지자체·공기기업의 기후변화 적응행동계획, 기후변화 정보시스템 구축의 내용을 법제화함(박창석 외, 2014)
- ◆ 미국은 1990년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지구변화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 제정 이후로 「에너지 자립 및 안전보장법」 등이 제정되었으나(박기령, 2016) 주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및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 또한 출범 이후 행정명령·대통령 교서·계획<sup>6)</sup>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임(최현정, 2021)
- ◆ 일본은 1998년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地球温暖化対策 推進法) 제정 이후로 2018년 4개 장, 20개 조로 구성된 「기후변화 적응법」(氣候變動適応法)을 마련함(김잔디, 2019)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체별 책무, 5년 주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종합보고서 작성,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수립, 지방 적응계획 수립 및 지방 기후변화 적응센터와 지역협의회 운영, 국립환경연구소의 기후적응 추진 업무, 국제협력 등의 내용 포함
- ◆ 중국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전문 입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삼림법」(森林法) 등의 관련 현행법을 토대로 정책을 진행 중임(윤성혜 외, 2019)
-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을 위하여 자국에서 의사결정 지원에 필요한 내용과 과정에 기반을 두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과정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취약성 및 위험 평가 → 적응 대안 검토·평가 → (정책적) 의사결정 → 실행 → 모니터링·환류로 구성

6) 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13990), Executive Order on 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14007),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14008), Memorandum on Restoring Trust in Government Through Scientific Integrity and Evidence-Based Policymaking, American Jobs Plan of 2021 등임.

**그림 2. 기후변화 위험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자료: Willows et al.(2003) 바탕으로 저자 작성.



# III 기후변화 적응 법제 방향

## 1 기본 방향

- ◆ 기후변화 적응 법제는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기반을 두고 마련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추구하는 기후변화 위험 저감 및 탄력성 증진이라는 ‘현명한 적응’(Wise Adaptation) 방향에 부합해야 함
- ◆ 기후변화 적응 법제는 불확실성과 포괄성, 장기성, 지역성 등의 특성이 있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효과성과 효율성, 합리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여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 기후변화 적응 법제는 적응정책 과정을 이행 및 실행한 후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이 수정·보완되는 계획된 적응(Planned/Active Adaptation)이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체계로 구성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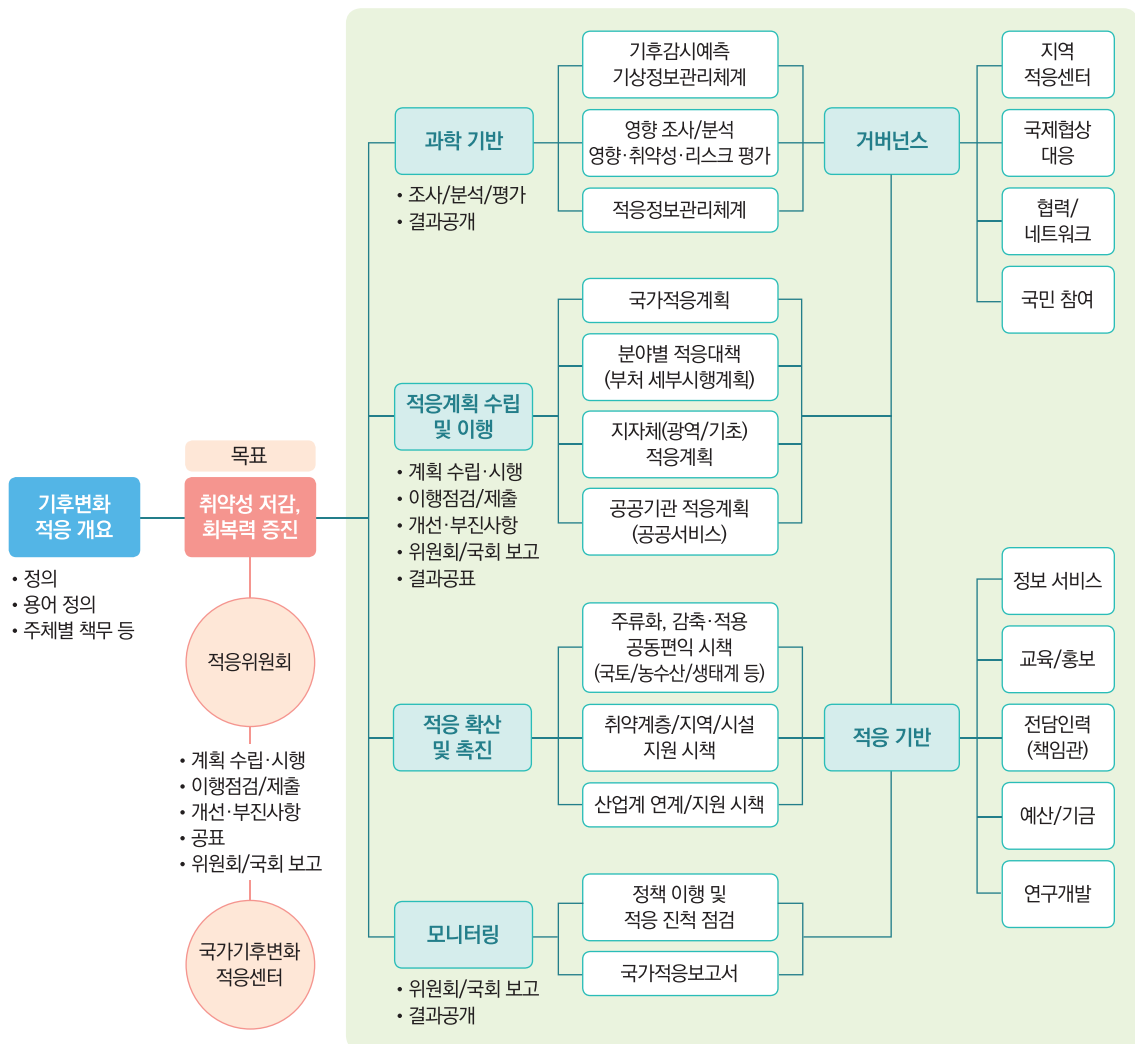
## 2 내용 구성

- ◆ 기후변화 적응은 온실가스 완화와 달리 수치화된(정량)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반을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 ◆ 법률의 구성은 개요, 과학기반 마련, 적응계획 수립·시행, 적응 모니터링, 적응 확산 및 촉진, 적응 기반 및 거버넌스로 구성하고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개요: 용어 정의, 적응 기본원칙, 주체별 책무, 적응 목표(방향)
  - 위원회/조직: 기후변화 적응 위원회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 과학기반 구축: 기후감시·예측 및 기상정보 관리체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조사·분석 및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위험 평가, 기후변화 및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보고/피드백/공개), 기후적응 정보 관리 및 서비스
  - 국가 적응계획 수립·시행: 계획 수립, 이행점검 및 제출, 부진사항 점검 및 개선, 위원회 및 국회 보고, 결과 공표, 적응정책 협의회
  - 중앙부처 적응대책: 소관 사항 대책 수립 및 이행 점검·제출
  - 지자체 적응대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단위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제출, 지역 기후적응센터
  - 공공기관 적응계획: 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실적 점검·제출



- 적응 확산·촉진: 적응 주류화를 위한 부문별 시책, 완화-적응 공동편익을 위한 시책, 취약계층·지역·시설 보호 및 지원 시책, 산업계 연계 적응산업 육성 및 취약산업 보호 지원시책
  - 적응 모니터링: 적응 진척 모니터링 및 점검, 국가적응보고서
  - 거버넌스: 국제협상 대응,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국민참여
  - 적응기반: 교육, 홍보, 전담인력, 예산/기금, 연구 및 기술 개발·지원
- ◆ 기후변화 적응 법제 체계 및 항목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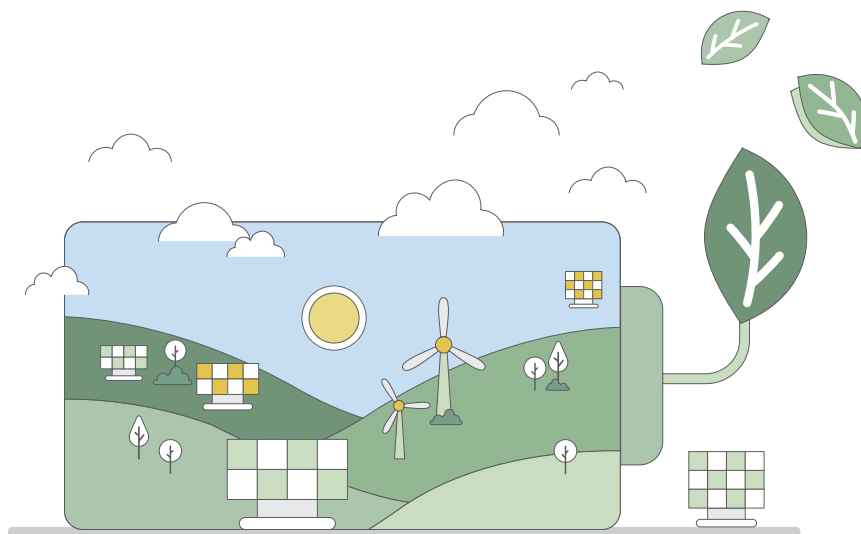
그림 3. 기후변화 적응 법제 구성 체계 및 항목(안)



자료: KEI 그린뉴딜입법대응 TF 제3차 실무회의 발표 자료(2021.3.4)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 IV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강화

- ◆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법 성격을 지니는 「녹색성장법」상 기후변화 적응 관련 내용은 법률과 시행령의 각 1개, 총 2개 조항에 불과함
- ◆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한 규정이 개별 부처 소관 법률에 마련되어 분야별 적응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한 방향 목표와 원칙, 적응력 강화 및 탄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필요 기반 마련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 2020년 국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을 입법하고 정부는 계획과 전략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양대 축인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재인식 및 적응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기후변화 완화’와 동등하게 병행 추진되지 못함
- ◆ 기후변화 적응이 지니는 불확실성, 포괄성, 지역성, 장기성, 개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유연하며,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기후변화 적응 추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함
- ◆ ‘탄소중립’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변화하는 기후와 그 영향에 대한 ‘적응’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과 강화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매우 가치가 높음





---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김잔디(2019), “일본 ‘기후변동 적응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9 제1호, 한국법제연구원, pp5-13.
- 박기령(2016),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및 법제연구-2009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pp.28-30.
- 박창석 외(2014),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 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신지영 외(2016), 「기후변화 적응 법령안 마련 및 법제화 지원」, 환경부·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신지영(2021), “기후변화 적응부문 입법 방향 및 조문 구성(안)”, 「KEI 그린뉴딜입법대응TF 제3차 실무회의」, 3월 4일,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윤성혜 외(2019), 「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제연구 : 중국의 시범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pp.46-47.
- 최현정(2021), “바이든 시대,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쟁점”, 「이슈브리프」, 2021-15, 아산연구원.

---

### 국외문헌

- Nachmany, M. et al.(2015), *The 2015 Global Climate Legislation Study: A Review of Climate Change Legislation in 99 Countries-Summary for Policy-makers*.
- Smit, B., I. Burton, R. J. T. Klein, R. Street(1999), *The Science of Adaptation: A Framework for Assessment,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4(3-4), pp.199-213.
- Willows. R. et al.(2003), *Climate Adaptation: Risk, Uncertainty and Decision-making*, p.7.

---

### 온라인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1.6.1.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기후”, <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검색일: 2021.6.1.
- 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 “climate change”, <https://climate-laws.org/>, 검색일: 2021.5.26.